

#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즐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 2

2016-2호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강화 방안 등 2건
- **충청남도 주요 제·개정조례**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등 4건
-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 5건
-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5건
-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경기도의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3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5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등 2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Contents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 충남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강화 방안 (5)
- ▶ 사립학교의 정상화 및 건전한 발전 방안 모색 (9)

## 충청남도 주요 제·개정 조례

-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14)
- ▶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19)
- ▶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3)
- ▶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25)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27)
- ▶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29)
- ▶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1)
- ▶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35)
- ▶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 (37)



##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40)
- ▶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3)
- ▶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46)
- ▶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49)
- ▶ 영암군 농촌민박 지원조례 (51)

##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 경기도의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55)
- ▶ 전북도의회 도민 참여 조례 공모제 시행 (56)
- ▶ 경북도의회 일본 시마네현 소위 '죽도의 날' 강력히 규탄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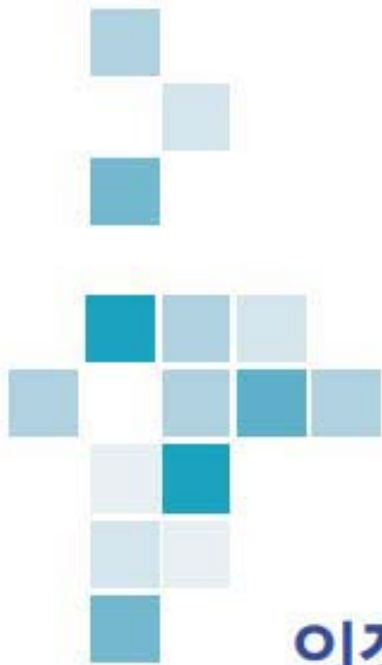
## 최근 제·개정 법령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0)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61)
- ▶ 건축기본법 (63)
- ▶ 문화재보호법 (64)
- ▶ 농업기계화 촉진법 (65)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67)
- ▶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69)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강화 방안

&lt;'16. 2. 22.(월) / 아산교육지원청&gt;

## 총 평



학부모와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중심의 학교 진로·진학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참가자 대부분은 최근 노동시장의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진학지도’ 틀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 특성을 반영한 ‘진로 설계’가 절실하다고 일깨운 계기가 되었다는 평이며,

진로교육 강화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이지 아니라, 진로와 진학 등 균형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주요 토론 내용

## ① 주제발표

## 〈 고미영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관 〉

높은 교육열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으나, 여건변화로 대학 졸업생의 취업을 저하, 저출산 및 입시경쟁의 심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교육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따른 학습자 중심 학습방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촉진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 학교 진로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진로교육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기틀을 마련하고, 진로교육, 진로체험 요구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제의 지속적인 제도정비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강조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설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활동 보장 및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병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② 지정토론

### ① 장기승 (충청남도의회 의원)

진로교육 방법을 위해 일반교과목, 진로교과목 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의식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나서야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중요

청소년의 성향이나 특성을 살리고, 정확한 자기진단과 자아탐색 등 자신의 생애 목표를 정립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교육적 방안이 요구됨

### ② 정대옥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학교교육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2016년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추진 계획 수립

#### - 초·중·고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체제 구축

- ▶ 생생 직업체험의 날 운영 / 상설진로캠프 / 충남진로 체험전 / 진로상담실 /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등

#### - 진로맞춤형 대학진학지도

- ▶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학진학지도 연수 / 진학상담 프로그램 / 진로진학 토크쇼/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운영 등

### ③ 이윤영 (온양여자고등학교 교사)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학입시가 최대의 걸림돌인 만큼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이 아닌 진로와 진학 등 균형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독서·토론, 외국어교육, 자기주도적인 활동과 체험학습, 예술문화교육 등의 진로교육으로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제언

### ④ 지명근 (온양풍기초등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래핵심역량 개발을 위해 진로교육과 입시제도의 개혁, 청소년 진로활동 지원체계 정비, 학부모 진로서포터즈 양성이 필요

### ⑤ 김부경 (아산시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진로결정 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모는 자녀에게 체험기회 제공과 자녀의 입장에서 긍정적 신뢰와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교육기관에서는 올바른 인성, 학습역량 등 교육방법을 통하여 꿈과 끼를 찾아 주는 역할이 중요

## ③ 청중토론(질의답변)

- 학생들이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부모들이 인정해 주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진학에 있어서 개인이 좋아하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월광초 학부모]

→ 그 동안 교육과정과 진로의 시스템적 큰 변화를 추구하고자 정부가 정책적으로 학교교육을 입시로 매칭시키는 것들이 지금의 입시이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어 초·중·고 진로교육의 결과로 이끌어내는 것이 진학으로 본다면, 진로와 진학은 하나의 맥락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끼와 꿈을 일치시키는 진로교육이 되어야 함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정대옥 교육연구사]

## 사립학교의 정상화 및 건전한 발전 방안 모색

<'16. 2. 23.(화) / 천안교육지원청>

### 총 평



학부모, 사립학교 교직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함양하여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통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논의한 자리로

참가자 대부분은 사립학교의 정상화 및 건전한 발전방안을 토대로 사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또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인정, 이에 따른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사립학교를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 주요 토론 내용

#### ① 주제발표

##### < 홍성현 위원장(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실현이 필요

사립학교의 특수성 보장은 설립·운영자의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다양한 교육욕구에 부응함으로써 국민의 개성을 존중한다는 자유민주주의 교육이념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특수성 보장 역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정부의 물가 안정정책으로 학생의 수업료는 공립수준인데 비해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 재정 수요는 큰 폭으로 인상되어, 재정결함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되는 실정으로 열악한 사립학교는 공공의 교육기관으로써 공공보조가 제한되어서는 안됨

## 2 지정토론 (4인)

### ① 강윤중 (충남사립학교행정실장 협의회장)

사립학교는 교육의 과거·현재·미래로 양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질적인 측면은 학교교육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오늘날 학교법인의 자율경영 침해를 정당화하는 잘못된 근거로 작용하여 사학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로 사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신뢰회복이 필요

### ② 이종필 (충남사립학교법인협의회 사무국장)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액부담하지 못할 경우에 이사회 운영경비를 비롯한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출을 제한하는 등의 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사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바로잡혀 통제와 규제보다는 지원과 육성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

### ③ 윤덕수 (학교법인폴무학원 사무국장)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교육발전에 책임지고 있는 역할에 비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현실로, 환경변화와 사회변화에 따라 사무직원의 위상과 처우개선이 요구됨

#### ④ 길재환 (충남교육청 평생교육행정과 사학담당사무관)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효율적 재정운영 및 관리의 적정화를 유도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며, 학교간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공식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재정결합보조금 지원방식은 개선되어야 함

또한 사학법인의 재정보호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기부금 등을 통하여 학교 전출금을 확대한 법인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 교부 시 우대, 사학기관경영평가 시 우대, 시설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③ 자유토론

- 법정분담금 납부하지 못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법적 규제와 제재 보다는 열악한 사립학교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이종필 사무국장]

⇒ 충남의 경우 100%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을 잘 알리고, 공론화를 시켜서 의회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 협의·소통하여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홍성현 위원장 답변]

- 충남 사립학교의 학생수 대비해서 공무원 수보다 행정실 직원 수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의 사학에 관련된 업무부서가 여러부서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서를 단일화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행정적 지원과, 또한 팀 명칭도 사학규제, 사학통제한다는 느낌보다 ‘사학지원담당’으로 개명할 수 있는지?

[윤덕수 사무국장]

⇒ 우선 사립학교 지원부서 명칭은 변경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음. 모든 행정기관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평가 중 재정평가도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법정기부금 지표가 반영된 실정이지만, 법정기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열악한 사립학교에도 공정하게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학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충남교육청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

[김용진 평생교육행정과장]

#### 4 청중토론(질의답변)

- 사립학교 재건축 시 대응투자로 예산의 30%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개선 개축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립학교 학생들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개선할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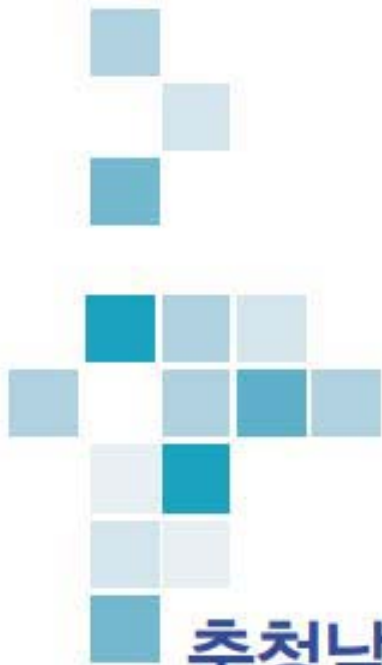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

⇒ 주민공용시설과 교육지원시설은 대응투자 30%로 되어 있지만 보통교실 개축에 있어서는 대응투자 항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재산의 소유권 문제 등으로 자구노력을 요하는 측면에서 권장사항으로 보여짐

[사학담당 김제원 사무관 답변]

⇒ 대응투자가 30%, 20%로 규정지어진 게 아니라 사립학교 스스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하는 사항이며, 개축 사업은 교육부 지원은 없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바, 한 사례로 복자여중·고 개축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 있었으나, 건물 안전도 검사 및 건물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음

[홍성현 위원장 답변]



## 충청남도 주요 제·개정 조례



# 1.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16.2.22.] [충청남도조례 제4094호, 2016.2.22., 제정]

## □ 주요목적

충청남도에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이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와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 사항을 정함

## □ 주요내용

제2조(기본이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도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의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도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제2장 기본계획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3. 추진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제9조에 따른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해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마다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제9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분석
3.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청년 6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실

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국장, 복지보건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⑩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그 구성에는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 ③ 위원회가 본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4장 청년정책사업

제12조(사업범위)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청년정책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확대
2. 능력개발
3. 고용확대
4. 주거와 생활안정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6. 권리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축적 지원
  - 나.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 다.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 강구
  -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확대와 일자리 불일치 해소대책의 수립·시행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 강구

다. 창업육성을 위한 그 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대책 강구

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 4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방안 강구

나.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해당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문화예술의 향유기반 확대

####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 강구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 실시 또는 그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 확대

제14조(사업수행) ① 도지사는 제13조의 추진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6.2.22.] [충청남도조례 제4099호, 2016.2.22., 전부개정]

### □ 주요목적

충청남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 주요내용

제2조(충청남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도 양성평등정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의 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도 양성평등정책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및 도 양성평등정책 실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및 도 양성평등정책 실시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성별영향분석평가)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의 방지 등) ① 도지사와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희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 ① 도지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

과 그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장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8조(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 도지사는 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및 도 연도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4.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6.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위촉 하여야 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여성가족정책관
3. 양성평등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도 양성평등정책 협의)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는 도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 제3장 양성평등 참여 및 문화확산

제19조(도정 참여) ① 도지사 및 도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도정 및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공직 등 참여)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한 공직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 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지도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양성평등주간) 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여성 친화도시) 도지사는 도내의 시·군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4조(추진실적 평가) ① 도지사는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주요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25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양성평등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양성평등 기금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참여 확대
2. 양성평등 문화 확산
3. 양성평등 촉진
4.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제26조(양성평등 정책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하여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도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27조(유공자 포상) 도지사는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28조(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출연금
2. 도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금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2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3.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4.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대학 입학금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 3.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2.22.] [충청남도조례 제4101호, 2016.2.22., 제정]

#### □ 주요목적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으로 해당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 전통주 제조업자는 그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홍보활동 등)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전통주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우선이용) 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도(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 행사에서 이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의 경우에도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경비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전통주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
  - 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 3 전통주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 4 그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4.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시행 2016.3.22.] [충청남도조례 제4105호, 2016.2.22., 제정]

### □ 주요목적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 품질향상과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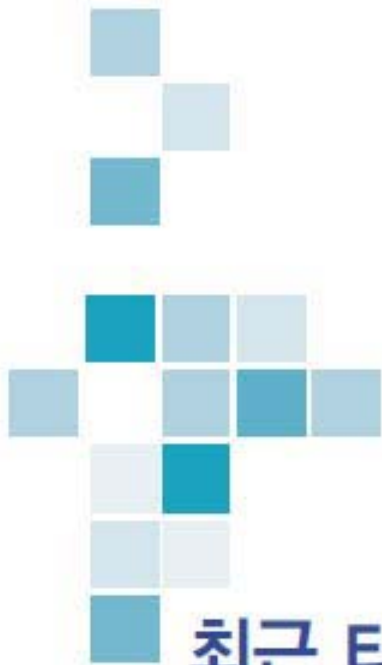
1. “공공건축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기관(제5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1호의 설비 등을 말한다.
3. “소방시설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  
호의 영업을 말한다.
4. “소방시설공사”란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영업대상인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공공건축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소방시  
설업의 육성 등으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분리 발주) 발주자는 공공건축물의 공사 중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  
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하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할 수 있다.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소규모의 경우
3.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1.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3.18.] [부산광역시조례 제5301호, 2016.2.17., 제정]

## □ 주요목적

부산광역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

##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기부금품의 접수,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부산광역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시
4.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5.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
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①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2.19.] [대전광역시조례 제4674호, 2016.2.19., 제정]

### □ 주요목적

대전광역시의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을 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 도모와 도시발전에 이바지함

### □ 주요내용

제2조(정의) “건설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기술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
2. 자치구. 다만,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에 경제성 등이 우수한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주청에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사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두는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심의·자문의 요청 및 결과 통보)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관리)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통보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건설신기술개발자가 건설신기술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건설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건설신기술 실명제) 발주청은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사후평가를 위하여 건설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건설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건설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건설관련 공무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건설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6조제1항제1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그 밖에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유익한 정보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우수한 건설신기술개발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설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3.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2.24.] [경기도조례 제5158호, 2016.2.24., 제정]

#### □ 주요목적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대 도민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행정기관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제5조의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연도별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

도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제6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 ① 산불방지대책본부 내의 산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불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직원을 차출하여 운영한다.

1. 상황실에는 상황실장 1명을 두며 산림과장이 된다.
2. 상황실은 산불조심기간 중(봄철 : 2.1~5.15, 가을철 : 11.1~12.15)에 운영하되,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3.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평상시 21: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하여 상황을 유지한다.
4. 상황실 근무반은 평상시 사무관급(또는 팀장급) 이상 1명을 포함하여 편성하되, 기상상태 및 근무 가능인력 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 및 인원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5. 산불경보 「경계」 발령 또는 「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상황실장을 축산산림국장으로 격상한다.
6. 주간에 발생한 산불이 야간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상황실 근무자는 다음날 09:00까지 산불상황을 관리하고, 근무 종료 시 당일 근무자에게 산불상황을 인수·인계한다.

②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초동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도 소속기관, 산불유관기관과 상황을 긴밀히 유지하며 산불발생 징후를 감시한다.
2. 산불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보고 및 산불유관기관에 전파하고 헬기 지원요청 등 초동조치를 한다.

3. 산불진행 및 진화 상황을 파악·관리하면서 헬기 등 진화자원의 추가투입, 산불유관기관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그 밖에 산불발생 언론 보도내용,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를 한다.

③ 상황실 근무자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상황실에 비치된 다음 각 호의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한다.

1. 산림지리정보 종합관리 시스템(PGIS)
2. 산불감시 영상정보 운영(무인 감시카메라, 현장 영상정보 등)
3. 산불상황관제시스템
4. 일일 산불발생 보고 및 근무일지 작성 등

제7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경기도 산불방지협의회(이하 “산불방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내의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2.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③ 산불방지협의회는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축산산림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산불방지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과장이 된다.

⑤ 산불방지협의회는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산불방지 활동) ① 도지사는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해 매년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경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양한 산불방지 활동을 개발·보급한다.

1. 산불방지 활동의 계획과 목적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 3. 산불방지 활동 관련 유사활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도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대한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불방지 지원)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 우수단체 또는 개인
2. 산불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3.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산불업무를 추진한 유공 공무원

② 시상의 종류,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기록 및 보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 및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별지 제1호 서식)
2. 산불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별지 제2호 서식)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4.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6.2.26.] [강원도조례 제3979호, 2016.2.26., 제정]

### □ 주요목적

강원도민이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고”란 수난·화재·추락·교통사고·약물오남용 등 도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기초안전교육”이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4. “체험시설”이란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초안전교육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안전관리 방안이 강원도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초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기초안전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초안전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안전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분야별 기초안전교육 추진계획
3. 기초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인적자원 활용 방안
4.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민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초안전교육의 실시) ① 도지사는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초안전교육 체험시설 지원 및 이용) ① 도지사는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험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시설의 건립비용 및 교육사업 수행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강원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체험시설”을 이용하여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안전사고 예방 및 기초안전교육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5.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16.2.26.] [충청북도조례 제3885호, 2016.2.26., 제정]

### □ 주요목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

### □ 주요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주민자치 활성화 단체”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도민 등에게 확산시킬 것을 목적으로 국가 및 충청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이하 “주민센터”라 한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3.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단체(이하 “활성화단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활성화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5조(결산보고 등) 보조사업을 수행한 활성화단체는 사업 추진실적을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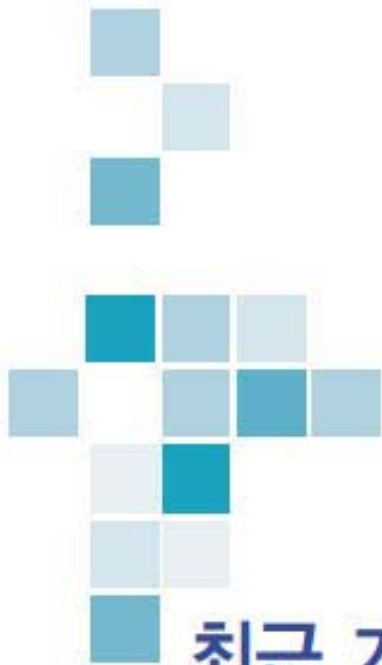
게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주민센터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도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준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1.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2.22.]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265호, 2016.2.22., 제정]

## □ 주요목적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보령시민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소셜채널”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5. “SNS 홍보요원”이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외부전문가”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심사방식과 절차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SNS 홍보요원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SNS 홍보요원

을 100명 이내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SNS 홍보요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평가를 거쳐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SNS 홍보요원은 시정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SNS 홍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홍보요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SNS 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SNS 홍보요원의 취재원고료나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2.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2.1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052호, 2016.2.11., 제정]

### □ 주요목적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주요내용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부실공사 신고·접수) ㉠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 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구성) ㉠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감사담당관, 건설업무와 관련된 논산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명 이상)

2. 건설·교통·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나.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다.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취득 후 같은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의 해당분야에서 제2호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대상) 논산시가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
2. 논산시의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설공사
3. 논산시의회의 요구가 있는 공사
4. 그 밖의 위원회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실별점 부과
3. 그 밖에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하며, 부실공사 신고가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부실여부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별점 측정기준의 주요부실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 간사(담당주사)와 서기(담당자) 각 1명을 둔다.

제9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제10조(결정결과에의 조치)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결정결과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3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2.19.]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490호, 2016.2.19., 제정]

#### □ 주요목적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고양이, 타조 등 그 밖에 사육하는 동물 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대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소유자 등의 책무) ㉠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가축의 소유자 등은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가축의 소유자등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한 소독약 이외에 평시 소독에 대하여는 약품을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대책수립)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7. 살처분 및 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의 관리를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① 가축방역에 관한 관리대책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위원장은 축산관련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주시 축산과장
2. 충북도축산위생연구소 방역관련과장
3.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지도관련상무
4. 충북낙농협동조합 지도관련상무
5. 생산자 단체 시지부(지회·협의회)장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중부출장소장
7. 공수의사 대표
8.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9.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가축방역담당팀장

으로 한다.

제8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가축전염병의 방역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및 의결) ㉠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록을 소집한다.

- ㉡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의원과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회보고) 시장 또는 위원장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축산농가가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로자의 포상) 시장은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 등 가축방역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4.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16.2.15.]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286호, 2016.2.15., 제정]

### □ 주요목적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 및 생활한복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전주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옥마을 내의 공연·전시·체험 또는 문화·유적시설 등을 말한다.
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4. “입장료 등”이란 문화시설에 입장하기 위해 납부하는 입장료 및 관람을 위한 관람료, 문화체험을 위한 체험료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우리 전통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한복착용 권장) 시장은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한복의 날 지정) ① 시장은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주시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한복의 날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로 한다.

제7조(고유 명절) 시장은 고유 명절에 시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활성화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해 한복착용의 육성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시장은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한복착용자의 우대) ①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 및 제6조에서 정한 한복의 날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범위 및 감면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5. 영암군 농촌민박 지원조례

[시행 2016.2.25.]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250호, 2016.2.25., 제정]

### □ 주요목적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민박시설을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할 경우 농가부담경감을 위한 농촌민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민박”이란 농촌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촌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2. “농촌민박시설(또는 농촌민박용 주택)”이란 농촌민박 운영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설치한 연면적의 합계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및 민박을 운영하기 위한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3. “농촌지역”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증축, 개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며, “대수선”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농촌민박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농촌민박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을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사업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영암군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민박 사업자로 신고를 득한 자

제5조(지원금 신청) 농촌민박 지원 사업 지원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영암군 농촌민박 지원 대상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취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착공 또는 완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개별법으로 정한 각종 신고나 인·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
2.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영암군에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친환경농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민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보조금액 심의
2.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규모 및 우선순위 선정
3. 그 밖에 농촌민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사업의 시행과 정산) 사업의 시행과 정산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원금 교부액 및 교부 조건) ① 군수는 농촌민박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은 2천만원이하로 한다.

- ② 농촌민박으로 지원받은 자는 당해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5년이 경과하

기 전에 건축물을 양도·교환할 수 없고, 최소 5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단, 사망·폐질환 등의 사유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지급중지) 군수는 농촌민박으로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지역으로 전출되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전출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영암군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2. 지원받은 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였을 경우
3. 기존 농촌민박사업자가 공사 기간 내에 민박사업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4. 건축시설이 이 조례에서 정한 농촌민박시설 규모 및 형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규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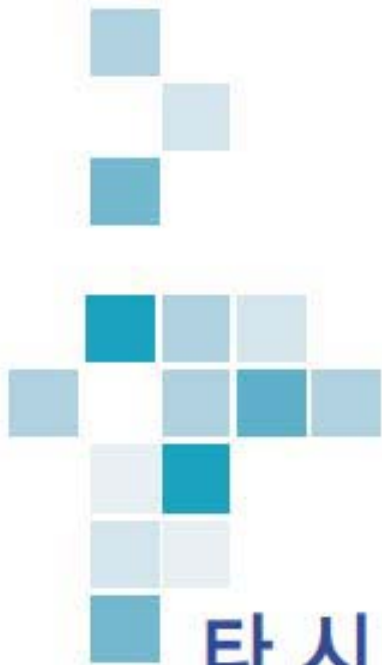
제13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받은 자가 제1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이 교부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농촌민박 지원 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4. 농촌민박 지원 사업 완료 후 1년 이상 민박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민박운영 개시 이후 5년 이내에 민박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제14조(환수방법)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환수 조치할 경우 지원받은 자가 반환에 불응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준용) 농촌민박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 경기도의회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2.15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준비모임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5년 9월 박승원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후속조치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옥분 도의원과 이난현 민주화기념사업회 본부장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준비위원 등이 참여하여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교교육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제도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2016년 예산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7천만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민주시민교육 추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 도민 참여 조례 공모제 시행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백경태)는 올해부터 도민 참여 조례 공모제를 년 2회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올해를 자치입법의 원년으로 삼고 전북 도정 및 교육·학예의 발전과 미래설계를 위한 도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조례 제안 제도인 ‘도민 참여 조례 공모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운영위는 도민들의 생활속에 숨어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조례로 입법화함으로써 열린의회를 실현하고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바뀌 나간다는 방안이다.

이 공모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추진하되, 접수기간은 상반기는 3월부터 6월말까지, 하반기는 9월부터 12월말까지로 계획하고, 접수가 각각 완료되면 “도의회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에서 1차 심사를 한 후 “운영위원회”가 최종 심사를 하여 총 12명(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정도의 입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입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의 상장을 수여받게 된다.

운영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도민들이 이 공모전에 참여하는데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달 말까지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www.assem.jeonbuk.kr](http://www.assem.jeonbuk.kr))에 팝업창을 개설하고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는 한편, 우편접수나 방문접수에 대비해서도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민들이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먼저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공모전에 참여하더라도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는 7가지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 ▶이미 채택 또는 검토되고 있는 제안(조례)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건의나 시정사항, 민원사항,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동일한 제안은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 ▶조례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연구회(1차심사) 또는 운영위원회(2차심사)에서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등이다

이 공모전을 처음 입안한 운영위원회 정호영(김제 제1선거구) 부위원장은 “전북 도정 및 교육·학예의 발전과 미래 설계를 위해 마련된 ‘도민 참여 조례 공모전’ 인 만큼 많은 도민들이 참신하고 창의적인 입법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참여하시길 바란다” 고 밝혔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한 “도민 참여 조례 공모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들의 관심이 많아야 한다. 정치를 꿈꾸는 대학생이나 청년층이 얼마나 호응을 할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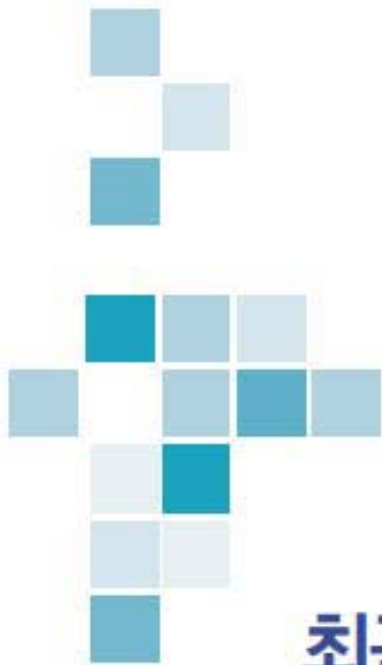
## 일본 시마네현 소위 ‘죽도의 날’ 강력히 규탄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2월 22일 오후 1시 30분 울릉읍 도동 부두공원에서 열린 「일본 ‘죽도의 날’ 지정 철회 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해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행사는 (사)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와 (재)독도재단 등 독도 관련 기관단체와 울릉주민, 관광객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일본 시마네 현이 22일 소위 ‘죽도의 날’ 행사에서 드러낸 독도침탈 야욕을 분쇄하고 경북도민이 한마음으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분명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자는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일본이 제국주의 침탈의 희생물이었던 독도에 대한 영토권 영유권 주장도 모자라 소위 죽도의 날을 제정하고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우리 땅 독도를 수호하자”고 결의했다.

남진복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은 격려사를 통해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하며, 앞으로도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토침탈 만행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결연한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했으며, “독도수호 방안으로 울릉도·독도의 해양수산발전과 독도 정주기반시설 조성 및 접근성 개선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근 제 · 개정 법령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6.2.4.] [법률 제13201호, 2015.2.3., 제정]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더불어 국가 간 경제의 국경은 갈수록 모호해지고,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으로 수입물량이 2002년 대비 건수는 연평균 5퍼센트, 물량은 2.8퍼센트씩 증가하여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절반 이상이 수입식품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수입 국자, 밥그릇, 젓가락 등 식기류에서 발암물질 검출,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 성분 또는 비만치료제 성분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불법 수입식품 수입, 부패·변질된 수입 농산물 등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으로 관리하고 있어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세계의 정책 흐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 전(前)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통관 단계, 시중 유통단계의 상호 연계 및 환류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률의 전면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수입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강화, 영업자 구분 관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반영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입 품목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수입자 및 해외제조업소를 관리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수입식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 □ 개정이유

현행법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신청하거나 요구하는 민원사항의 신속·공정하고 친절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의 신청·접수·처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행정기관의 범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를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의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민원은 그 특성에 따라 처리절차나 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민원의 종류를 구분함이 없이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은 국민권익과 관련이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민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 등의 일부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을 일부 개선·보완함으로써 민원의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고 민원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민원사무’라는 용어는 공무원의 내부 업무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어 이를 ‘민원’이란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 제명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민원을 그 특성에 따라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으로 분류함(제2조제1호 각 목).

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의 대상을 정의규정에 명확히 규정하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함(제2조제3호).

라. 민원인의 권리·의무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와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나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제5조).

마.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민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공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도록 함(제17조).

바. 민원처리기간을 산정할 때,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을 제외함(제19조).

사.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반복 민원 등의 해소·방지대책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제34조).

아.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함(제35조).

자.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38조).

차.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그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개선안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39조).

카.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제40조).

### 3. 건축기본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70호, 2015.8.11.,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안전·에너지·환경 등에 관한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건축물과 관련된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를 통합한 건축 관련 규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국민에게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68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법」과 관계 법령의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 관련 규정이 많아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할 때마다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관계법령, 행정규칙, 고시 및 조례 등의 규정을 국민에게 쉽고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하며, 이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4.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6.2.3.]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삭제하는 대신에 해당 사안별로 전문가들을 수시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제6항).

나. 장애인 용어 정비의 일환으로 ‘불구’를 ‘장애’로 변경함(제38조제5항제3호).

다. 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고,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함(제39조제2항·제3항·제4항).

라.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제1항·제2항).

마.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등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69조).

바.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 및 주요 사항에 대해 문화재청장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제69조의2).

##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65호, 2015.8.11.,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고령자에게 상대적으로 작동이 용이한 동력운반차의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농업인들은 구입하려는 동력운반차가 농업용 기계인지 그 외의 용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 농업인의 혼란을 줄이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하여금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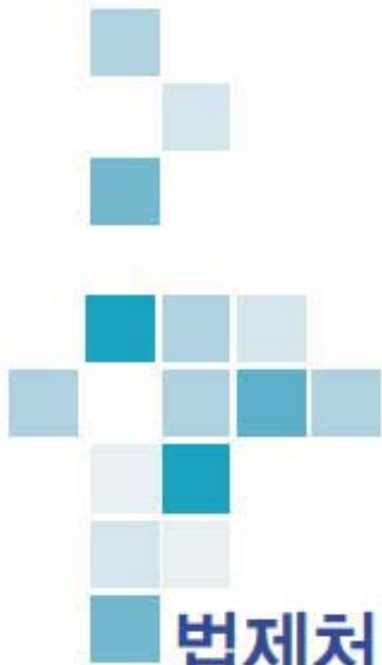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전국적인 사업시행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농업기계의 구입·이전 또는 폐기 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8조2제4항 신설).

나. 농업기계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를 구입·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함(제8조의6 신설).

다.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도록 함(제9조의2제1항).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경기도교육청 - 일괄개정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관련)

안전번호 의견16-0020, 회신일자 2016. 2. 2.

### 【질의요지】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

### 【의견 및 이유】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는 시행일에 그 개정내용이 해당 조례의 내용에 흡수되었고,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를 폐지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이하 “경기도 일괄개정조례”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069호, 2006. 12. 20. 공포, 2007. 1. 1. 시행)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명칭 등을 일괄정비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외 4개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경기도 일괄개정조례에 포함된 개정대상 조례가 정비되었고, 이후 개정대상 조례가 별도 개정이 되었으므로 경기도 일괄개정조례는 폐지하여도 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방식에는 그 개정대상의 범위에 따라 자치법규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방식과 자치법규의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

정방식이 있고, 일부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과 새로운 개정법령의 관계에서 개정내용이 기존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방식, 개정법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증보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흡수개정방식(부칙의 경우에는 증보방식)을 취하고 있는바(『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 252. 참조), 기존 자치법규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 자치법규가 시행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 자치법규의 내용에 흡수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따로따로 개정 자치법규안을 성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정되는 각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법령의 개정취지가 같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둘 이상의 법령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p. 341~ 345. 참조).

이와 같이 같은 종류인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식 중 부칙이 아닌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을 취할 때 소위 일괄개정 조례안을 만드는데, 이는 자치법규의 개정방식 중 자치법규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방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괄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시행되자마자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기존 자치법규의 내용에 흡수되어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는 시행일에 그 개정내용이 해당 조례의 내용에 흡수되었고,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를 폐지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광역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제1조 등 관련)  
안전번호 의견16-0019, 회신일자 2016. 2. 5.

### 【질의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및 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하는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이하 “부산시 조례안”라 함)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이 사안은 수질수생태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질수생태계법 제48조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등에게 이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는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려급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에서는 수질수생태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산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산시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수질수생태계법 제41조에 따른 기본배

출부과금의 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수질수생태계법 제41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1995. 12. 12. 선고 95추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시 조례안을 정비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MEMO



##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6년 3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3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